

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구비서류

※ 아래 제반 제출서류는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(2025.07.25.)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제출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필수 서류	해외체류 증빙서류	청약자(본인)	•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※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-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-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• 근로자가 아닌 경우 (반드시 제출) :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※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
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(여권번호 필수 기재발급)	배우자 및 직계 존, 비속	• 청약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 국내 거주 확인을 위해 제출 •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사정 불인정 ※ 출입국기록 :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※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출 필요
추가 서류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	청약자(본인)	•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※ 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(계속하여 90일)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안됨